

[일련번호 : 1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가족돌봄휴가 및 병가 승인 및 사용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□□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□□과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(16시간)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 등의 휴업·휴원·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학부모 알림장, 가정통신문,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,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.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5(병가)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르면,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휴가 승인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휴가 종료 후 증빙서류를 보완하여야 함에도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고 사용하였다. 또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였다. (세부내역 별도송부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감사일 이후,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대상자 확인 및 요청을 거쳐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보완하였다.

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